2023 **ANNUAL REPORT**



양형위원회 **Sentencing Commission** 제2장

양형위원회의 구성

조직도



II 위원장 및 위원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2명의 위원(법관 4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각 연임할 수 있다(법 제81조의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상임위원은 위원장으로부터 그 직무를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다(법 제81조의4 제1항, 제81조의5 제1항, 규칙 제4조).

◈ 제9기 양형위원회 구성 ◈

(2024. 4. 26. 기준)

지 위	성 명	비고
위원장	이상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 (법관)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상규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환(상임위원)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위원 (검사)	이주형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정유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위원 (변호사)	이재헌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채근직	변호사
위원 (교수)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위원 (학식·경험)	박장호	MBC 보도본부장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

※ 위원 변경(2023, 4, ~ 2024, 4,)

김선화 위원의 2023. 9. 6.자 사임으로 정유미 위원(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2023. 9. 18.자)이, 손관수 위원의 2023. 11. 30.자 사임으로 박장호 위원(MBC 보도본부장 2024. 1. 8.자)이, 신숙희 상임위원이 2024. 2. 13.자로 겸임해제되어 최환 상임위원(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2024. 2. 13.자)이, 유영근 위원의 2024. 2. 19.자 해임간주로 정상규 위원(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24. 3. 25.자)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되었다.

전문위원

1. 업무

 \prod

위원회에서 검토할 양형기준안 작성 및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의 연구, 기타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 위원을 둔다(규칙 제8조 제1항, 제3항). 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명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규칙 제8조 제2항).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운영규정 제23조 제1항).

2. 현황

◈ 전문위원단 구성 ◈

(2024. 4. 26. 기준)

성 명	직 역	소 속
김세종(수석전문위원)	 법관	서울고등법원
이혜란	법관	서울고등법원
이혜랑	법관	법원행정처
정현주	검사	대검찰청
이성화	검사	대검찰청
김현아	변호사	법률사무소 휴먼
 한상규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호진	교수	단국대학교 법학과
최준혁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진영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지영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복순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익구	국선전담변호사	서울동부지방법원

※ 전문위원 변경(2023. 4. ~ 2024. 4.)

박성훈 위원의 2023. 9. 8.자 임기만료로 윤지영 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3. 9. 9.자)이, 강선주 위원의 2023. 10. 4.자 사임으로 정현주 위원(대검찰청양형정책관, 2023. 10. 13.자)이, 최형준 위원의 2024. 3. 1.자 임기만료로 이혜랑 위원(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 2024. 3. 2.자)이, 김한울 위원의 2024. 2. 16.자 임기만료로 이성화 위원(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24. 2. 19.자)이, 김용민 위원의 2024. 3. 27.자 사임으로 이혜란 위원(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2024. 4. 1.자)이 각각 위촉되었고, 이민우 위원이 2024. 2. 13.자로 사임하여 해촉되었다.

Ⅳ 자문위원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의 방법 이외에도 운영규정 제27조 제2 항에 따라 다양한 직역의 인사들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양형기준 설정 및 변경을 비롯한 양형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자문위원단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교육계, 노동계,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직역의 명망가·전